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668 판결 [공사대금 청구등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피 고 유한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6.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28.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대금 1,53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21. 1. 18.부터 2021. 8. 1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2. 2. 1. 위 공사계약의 기간을 2020. 1. 18.부터 2022. 3.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29.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신축공사 중 파일 및 기타 토목 공사를 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21. 4. 1.부터 2021. 4.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가, 나항 기재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하수급업체들이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2021. 12. 15.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합계 1,681,800,000원(= 1,53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6. 10.부터 2021. 8. 9.까지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 건축사 C이 2021. 10. 29.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정률이 85%임을 확인하는 공정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일부분을 하수급한 업체들이 2021. 12.경부터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D공제조합, 주식회사 E 등으로 하는 증권 및 채권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21. 10. 29.경 이 사건 각 공사를 85% 완료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기성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인 1,429,530,000원(= 1,681,800,000원 × 공정률 85%)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 874,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고
부분을 완성하여 기성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치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874,53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판사 김은지, 판사 이명은

부동산의 표시

군산시 F 1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88.07㎡

2층 288.07㎡

3층 288.07㎡

4층 288.07㎡

5층 159.41㎡. 끝.

